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43460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4346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97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 선고 2016. 8. 12.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974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2,476,32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11. 19.부터, 342,476,320원에 대해서는 2015. 6. 19.부터 각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2,477,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2010. 10. 29. 주식양도계약 체결

1) 원고가 2010. 10. 29. 피고에게 주식회사 C(본점 서울 송파구 E, 등록번호 F, 2011. 10. 25.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본점을 성남시 분당구 H C동 1002호로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220,100주 중 110,449주(=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72,359주+원고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는 38,09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대금 1,20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갑 제2, 5, 7호증, 을 제1, 9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① 매매대금 1,200,000,000원 중 160,9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제2항).
- ② 피고가 2010. 3. 31.부터 2010. 10. 29.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한 39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한다(제2조 제3항 내지 제7항).
-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위하여 매매대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한다.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110,000,000원에 미달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다(제2조 제8항).
- ④ 이 사건 회사가 2010. 10. 2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 2,200,000,000원가량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배당될 1,100,000,000원가량에 대한 소득세를 피고가 납부하고 이를 위하여 매매대금 385,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한다.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가 385,000,000원에 미달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다(제2조 제8항).

⑤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54,100,000원(=1,200,000,000원-160,900,000원-390,000,000원-110,000,000원-385,000,000원)을 지급한다(제2조 제9항).

2) 피고가 2011. 1. 3.부터 2011. 10. 14.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54,1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나. 피고의 2011. 2. 28.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

1) 피고가 2011. 2. 28. 이 사건 주식 110,449주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72,359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24,748,120원과 증권거래세 3,075,25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3호증).

2) 피고가 2011. 2. 28. 이 사건 주식 110,449주 중 원고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던 38,09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13,081,490원과 증권거래세 1,618,82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4호증).

다. 이익잉여금 2,200,000,000원에 대한 배당 미실시

1) 피고가 2011. 10. 21. 이 사건 회사에서 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G(본점 서울 송파구 E, 등록번호 1, 2011. 10. 28.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 2,200,000,000원가량을 주식회사 G로 이전하였다(갑 제8호증,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 및 잠실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2)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익잉여금 2,200,000,000원가량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 주식에 배당될 금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 및 잠실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200,000,000원 중 11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합계

42,523,680원(=24,748,120원+3,075,250원+13,081,490원+1,618,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에게 67,476,320원(=110,000,000원-42,5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배당될 1,100,000,000원가량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200,000,000원 중 385,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는데, 위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8항에 따라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9.경 위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 D이 2011. 9.경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1. 9. 30.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D이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42,523,680원만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피고에게 67,476,320원 및 38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52,476,320원(=67,476,320원+385,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위 1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한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나머지

342,476,320원(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 위 342,476,3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의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하상혁

판사신종오